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8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박홍배 · 박희승 · 박정현
윤준병 · 백혜련 · 김한규
박정 · 안도결 · 김남근
한병도 · 진성준 · 문진석
정준호 · 김태선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를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과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및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④ (생 략) <u><신 설></u></p> <p>⑤ <u>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p> <p>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 제5항 · 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p>	<p>④ (현행과 같음) ⑤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u> ⑥ <u>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및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u></p> <p>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p>
--	---

